뉴 패러다임!! 새로운 기준의 노인요양원

운영규정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정 2011.05.12
개 정 1차 2012.03.02
개 정 2차 2013.08.01
개 정 3차 2013.10.01
개 정 4차 2015.03.13.
개 정 5차 2015.12.16
개 정 6차 2016.01.01
개 정 7차 2017.01.01
개 정 8차 2018.01.01
개 정 9차 2021.07.13.
개 정 10차 2022.12.14.
개 정 11차 2024.03.19
개 정 12차 2025.08.24

소	기장군 장안읍 천산로 63
전 화	051-711-0102

사회복지법인 선양 선양시니어빌리지 SEONYANG SENIOR VILLAGE

제 7 장 입소계약 및 해제

제20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시설의 입소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2) 입소자의 모집은 전화, 인터넷, 시설홈페이지, 본 법인 산하시설 안내책자, 유관기관 추천,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기타 상담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1조(입소계약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간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계약기간)

계약은 제26조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입소서류)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설입실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입소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5. 입소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매독, 결핵, B간염, C형간염) 1부.
6. 입소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입소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입소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1명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는 2명 이상의 경우 신원인수인 1명을 정

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급여제공과정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④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5) 입소자의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실시하는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 하여야 한다.

6)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제)

1) 시설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 한다.

① 입소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본원의 촉탁의 및 간호(조무)사의 정기적 건강 체크를 기준)

③ 운영관리비 또는 기타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④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 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⑤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⑦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⑧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⑨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① 입소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 및 보호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③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날부터 기산 하고 7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제27조(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28조(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건강검진 결과서(매독, 결핵, B간염, C형간염)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단, 입소자의 정기건강검진은 의무사항으로 건강 검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 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에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3) 입소자들로부터 월 수납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한 바에 의한다.
4)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은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에 의하며 그 내역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진료비 및 약제비, 그 밖에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과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3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리고 상담 후 내용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3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일환으로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에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입소자(보호자)에게 발부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 시설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안내에 의거 입소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자에게 급여제공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3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밸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③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3) 입소자제재 동의
   ① 입소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중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초래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 될 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다.

③ 경과 기록지를 작성 관리 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에서 모실 수 없는 경우 퇴소를 권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소계약서를 준용한다.